

보도자료

2010년 4월 6일(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이창희 과장(☎750-2630)
시장조사과 박철호 사무관(☎750-2645) parkch123@kcc.go.kr

'08년도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손실분담금 산정

- KT 손실보전금 897억원으로 전년대비 41억원 감소 -

□ 방송통신위원회는 '08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확정하고,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 보편적역무 중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은 KT를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편적역무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

○ '08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355억원(도서통신 2억원 포함), 공중전화 430억원, 선박무선 112억원 등 총 89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 '08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결과 >

(단위 : 억원)

구분	시내전화 (도서통신 포함)	공중전화	선박무선	합계
2008년	355	430	112	897
2007년	312	517	109	938
증감액(증감율)	43(13.7%)	△87(△16.8%)	3(2.7%)	△41(△4.4%)

- ▷ 시내전화(도서통신 포함)는 지속적인 매출 감소 및 비용 증가 요인 등으로 전년대비 43억원 증가
- ▷ 공중전화는 공중전화 낙전수입(18억원), 콜렉트콜 부가서비스 이익(53억원) 및 적정 공중전화대수 비율(97%)의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87억원 감소
- ▷ 선박무선은 낙후된 시설 교체비용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억원 증가

- 이렇게 산정된 KT의 손실보전금은 '08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9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게 된다.

〈 분담대상 사업자별 손실분담금 및 분담비율(단위:억원) 〉

구분	SKT	KT	(구)KTF	LGT	SKB	(구)LGP	(구)LGD	기타 (12개사)	합계
2008	310	221	149	86	43	28	26	34	897
2007	323	249	151	90	47	26	24	28	938
증감액	△13	△28	△2	△4	△4	2	2	6	△41
증감율	△4.0%	△11.2%	△1.3%	△4.4%	△8.5%	7.7%	8.3%	21%	△4.4%

※ 기타 12개사(34억원) : SK네트웍스(7.5), (구)삼성네트웍스(6.3), SK텔링크(4.8), 온세텔레콤(3.2), 드림라인(2.7), KT파워텔(2.7), CJ헬로비전(1.5), 세종텔레콤(1.3), CJ드림씨티(1.1), 씨앤엠(1.0), 티브로드한빛방송(0.9), 티브로드홀딩스(0.8)

- 방송통신위원회는 '09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09년말 대규모 명예퇴직(약 6천명)에 따른 퇴직금(약 1조원) 회계정리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 보편적역무 제도 일반 현황(붙임)

□ 보편적역무의 개념

- 보편적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서,
 - ① 유선전화서비스(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② 긴급통신용전화서비스(특수번호/ 선박무선전화) ③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로 구분(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 제공 및 손실분담

-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은 KT가 해당 서비스를 전국 모든 곳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손실금액을 분담
- 특수번호(112, 119 등) 요금면제, 장애인 및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별도의 손실보전 없이 해당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담

보편적 서비스 내용	분담방법	손실분담사업자
시내 및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손실분담	KT 포함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요금면제	특수번호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장애인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요금감면	시내외 전화,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IMT-2000, 번호안내, 초고속 인터넷, 무선호출 사업자

- 우리 위원회는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규모를 영업 보고서 검증을 통해 확정하고 이를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함